

공지사항

'87 품질관리상 신청 요령 안내

공업진흥청에서는 품질관리 활동의 범산업적인 확산을 기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매년 품질관리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있는바, 금년에도 품질관리 우수업체를 선발하여 '87 전국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표준화대회시 포상코자 아래와 같이 신청요령을 안내하니 관련업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1. 시상구분

- 가. 품질관리대상
- 나. 품질관리우수상
- 다. 품질관리장려상

2. 신청요령

- 가. 신청기한: '87. 9. 10까지
- 나. 신청절차: 관할 시·도를 경유 공업진흥청에 신청
- 다. 신청서류
 - 신청서
 - 품질관리 현황요약 설명서 2부
 - 품질관리 현황 설명서 25부

※ 연도별 수상업체 명단

연도	대 상	우 수 상	장 려 상
'80	-	-	신 한 발 브
'81	쌍 용 양 회 공업 유 성 기 업(주)	서 전 산 업	-
'82	한국타이어제조(주)	-	삼성라디에터공업(주) 국제아피스공업사
'83	대우중공업(주) 반도스포츠공업(주)	-	-
'84	삼 성 물 산(주) 효 성 중 공 업(주)	-	동 환 산 업(주)
'85	삼 성 전 관(주) 현 대 중 전 기(주)	-	-
'86	동 양 맥 주(주) (주)력 키	대우전자(주)	-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유지·보수용
부분품에 대한 수입추천 요령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공고 제78호

수입선 다변화 품목 공고(상공부 공고 제87-40호)총칙 제3조 제4호에 의거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 위임된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수입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7년 7월 28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 다 음 —

1. 추천대상 품목

- 가.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장비 중 전자제품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 나. 본회 기계류 국산개발 대상품목으로서 기계류 국산화를 위한 별도 요령에 의거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장비의 유지·보수용 부분품

2. 추천대상자

상기 1의 가, 나항의 실수요자(실사용자 또는 제조업자)

3. 추천기준

유지·보수용 부분품이 국내 수요에 비추어 경제성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품질, 규격, 특성 등이 국산대체 또는 수입선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

4.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5. 구비서류

- 가. 수입허가신청서 5부
- 나.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1부
- 다. 카탈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1부
- 라. 1의 가항(수입변장 등), 나항(부분수입추천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마.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예외수입 불가피 사유서 1부
- 바. 신청량의 적정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수입추천 수수료

이 요령에 의하여 수입추천받은 자는 소정의 수입추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기 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1. 이 요령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캐나다 정부의 「Outreach Program」 안내

1. 배 경

캐나다 정부는 1987년 5월 「Outreach Program」에 대한 계획에 착수하여, 캐나다의 사업 지향적인 젊은이들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조 건

1년에 3명씩 총 9명이 한국에 머무르게 되며, 각 참가자는 한국에 2년간 머무르게 된다.

한국에서의 첫 6개월은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며, 어학교육이 끝나면 18개월 동안 한국 업체의 영업 또는 무역 분야에서 일할 예정이다.

3. Outreach의 참가자

참가자는 아래와 같이 선발된다.

- 1) 캐나다 시민
- 2) 지난 2년내에 캐나다내 대학 졸업자
- 3) 국제영업 업무에 관심 및 경험이 있는 자
- 4) 언어 능력이 있는 자

4. 온타리오 주정부

주정부는 참가자에게 왕복 항공요금, 생활비 및 6개월의 어학교육 비용을 부담한다.

5. 연수업체

연수업체는 18개월 동안 참가자에게 영업/무역 분야에 고용하게 되며, 숙식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연수업체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다.

- 1) 연수업체 직원이 중간 관리직으로 캐나다 연수자와 교환근무 하게 된다.
- 2) 캐나다 및 캐나다 시장에 대한 이해 증대
- 3) 동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업체의 이미지 창출
- 6. 온타리오 주정부 요구 사항

업체에서 기숙사만 제공 또는 개인집 제공 요망. (단, 식사비용은 주정부에서 제공한다.)

「Outreach Program」에 관심이 있는 업체에서는 본회 국제부(553-0941)로 문의하기 바란다.

'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개최 안내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8회 대회를 개최하니 업체 여러분 나아가

전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1. 개 요

1988년 역사적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가 막을 내리면 곧이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동안 제 8회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가 개최된다.

세계 50여개국에서 장애를 극복한 선수, 임원 4천여명이 참가하여 저마다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될 이 인간승리의 대제전은 모든 인류의 가슴에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장애 등 4개부위의 장애자들이 17개총목에 걸쳐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남녀별 장애등급별로 경기를 치르게 되므로 세부종목수는 800여개에 이른다.

경기장으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 올림픽공원과 한국체육대학시설 등 15개소가 활용되며, 개·폐회식행사, 성화봉송, 문화행사, 국제회의 등이 다채롭게 엮어질 것이다.

2. 대회이념과 목표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는 도전과 극복, 평화와 우정, 참여와 평등을 대회이념으로 장애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세계장애자간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 우정어린 대회, 기존시설 물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검소한 대회, 한국인의 정성을 심어주고 우리문화를 소개하는 특성있는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대회개최 효과

장애자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개최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는 첫째, 장애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국내 100만 장애자의 사기를 높이고 아울러 사회 각분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여 국민화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장애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셋째, 복지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어 국위선양과 국제적 지위향상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4. 장애자 올림픽(파라림픽)의 어원

장애자 올림픽을 나타내는 파라림픽(Paralympics)은 라틴어 Para와 Olympics의 합성어로서 올림픽과 함께 개최되는 장애자 올림픽을 의미한다.

공지사항

구매 공고 안내

장치가 시간이 경과한 다음 물품은 관세법 제122조, 제124조 및 예산회계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91조,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세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각공고를 하였으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 문의처 : 부산세관 (462 - 0011)

(매각조건은 수입임)

채번번호	입항일자	선 명	B/L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화 주	장 치 장	세 액	매각금액
86-5-19	85. 8. 20	MARY STAR	LB 17	DC Motor	13 OR Hi Power	50,000pcs	일성전자	천경CFS	16,821,620	77,991,200
87-124	86. 11. 30	Patriot 73E	955 865001	금속완구차 부품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 공산품 품질관리법	4 1/2" Classic Car	78C/T 2,040dz	롯데쇼핑	한진수영	2,479,110	9,494,074
87-5-10	87. 1. 20	K/Master	5010	① 동의박 F-30VC F-30VC ② Poly Amide Film clss ③ Film for P. C. B.		500M 150M 200M 4,000M	청주전자	대한색소	3,211,260	15,186,380
039-7-452	87. 1. 19	CLOVER	JLYB 006	플로피 디스크		30C/T	화랑무역	고려감단	1,535,380	7,118,600
146-6-21	86. 7. 25	EVER	BMM PUS 9036	100% Polyester Film	W : 20"~50" T : 0.5~4mm	40M/T	동양무역	현 대	7,446,100	34,522,877
200-6-1214	86. 7. 24	K.W Seven	LBBU4229	전기장판		1,454pcs	선 경 구 내		4,917,350	22,798,642
200-7-400	86. 12. 12	K.J. Won	5211A	카스태레오	※ 수출반송품	80C/T 379개	한 주 전 자 구 내		2,396,780	8,788,236
200-7-501	87. 1. 9	Kuo Hsiung	2757	확성기	저름 5 cm 8Ω, 0.2W	265pcs	삼 미 기 업 구 내		167,580	614,476
200-7-507	87. 1. 8	K.W. Jin	91-CC -12%	Tape Dispenser		13C/T (387pcs)	Kang Nam Co.	구 내	1,784,750	8,274,770
200-7-545	87. 1. 22	K/Chnce	2051-3	완널계기 부품	DC-100UA 각종 ※ 수출반송품	556pcs	홍 창 물 산 구 내		360,970	1,965,364
200-7-547	87. 1. 25	오로라	18023	P. P수지	PG 9164T	75kg	삼우다이소	구 내	69,690	379,440
200-7-605	87. 2. 11	J 967	6416	트랜지스터	1 × 3 cm A 1133P A 1133Q C 2660P C 2660Q	30개 30개 30개 30개	금 성 사 구 내		62,310	339,270
200-7-616	87. 2. 9	K. W. Seven	390 9602	Volume Control Assembly	QR-530W	3,376pcs	삼 성 전 자 구 내		423,090	2,303,522
200-7-693	87. 2. 28	Oasis Altair	8277	① 전기냉장고 금성 ② 전기전공소재기 금성 ③ 전기카세트라디오 금성 ④ 중고프로그램팩트 금성 ⑤ 중고 브라온관 금성 12" ⑥ 중고 압축기용매 금성	V6030 V 520 Y-SR-913 TCR-270 L.BZ-9222W 340RB4 VS 24	1 ea 1 ea 1 ea 1 ea 1 ea 2 ea	Mr. C. K. Kim	구 내	359,650	875,314
200-7-548	87. 1. 25	오로라	18029	P. P수지	PG 9164T	50kg	세 한 프 라 스틱 구 내		46,460	252,960
342	87. 4. 19	J.977	4-364	Power Unit	Psk 80	2 ea	Sato Atsushi	용당구내	51,750	188,750
343	87. 4. 19	K. 735	4-374	중고 팩시밀리	NTT MINIFAX MF 1형 2호 SRF	1 ea	이 정 환	용당구내	58,420	318,070
368	87. 4. 28	K-751	4-558	전화기	인터폰형 버튼식	2 대	이 채 동 구 내		3,240	17,665
371	87. 4. 30	K-751	4-594	가정용 카세트식 비디오 게임기	HVC-002	1 ea	최 동 진 구 내		78,570	164,410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구제제도 적극 활용 안내

상공부에서는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 제 4 장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발생되었을시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음의 규정이 제정되었으니 관련업체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다 음

상공부 고시 제87-22호(1987. 7. 31제정)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의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장과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4 장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에 관한 세부운영·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국내산업) (1) 법 제 32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함은 산업영향조사를 신청한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동질물품, 유사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유하는 국내 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2) 제 1 항의 국내 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 부분만을, 국내 생산업자가 한가지 이상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생산 부분만을 국내 산업으로 본다.

(3) 제 1 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동종의 물품 중 동일·동질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 3 조(급격한 수입의 증가) 법 제 32조에서 “급격한 수입의 증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의 사실상 증대 또는 국내 생산에 대비한 수입의 상대적 증대 및 증가 추세를 말한다.

제 4 조(국내산업발전 저해 등의 판단기준) (1) 법 제

32조에서 “국내 산업의 발전 저해”라 함은 공장 폐쇄를 포함한 생산시설의 불완전 가동으로 생산시설의 상당한 유향, 상당수 기업의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의 가동불능 또는 산업 내부의 상당한 실업 및 불완전 고용, 또는 신규산업의 경우 정상적인 생산의 개시가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하며 기타 관련있는 경제적 요인 및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법 제 32조에서 “국내산업의 발전저해 우려”라 함은 판매의 감소, 국내 생산업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의 높은 재고수준 및 재고수준의 증가, 관련 국내 산업의 생산·이윤·임금·고용의 하락, 또는 투자의 기대수익률의 점진적 하락추세 등을 말하고 기타 관련있는 경제적인 요인 및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제 5 조(수입과 국내산업발전 저해 등과의 인과관계) 법 제 32조에서 당해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발전 저해 또는 저해우려와의 인과관계는 당해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발전 저해 등의 실질적이고 다른 요인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이 된 관계를 말한다.

제 6 조(계열관계 등 특수관계) 영 제64조 단서규정에서 “계열관계등 특수관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산업영향 조사의 신청) 영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영향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I 서식예에 따라 3부이상 작성, 제출하되 신청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비밀취급 자료) 영 제 6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명확히 “비밀”표시를 하고 비밀이 아닌 자료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당해 서류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조사신청 보고)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무역조사관(이하 “무역 조사관”이라 한다)은 산업영향 조사신청을 영 제 6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하지 않고 접수하였을 때에는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
2. 신청내용 개요

공지사항

3. 관계 법조문 등

제10조(산업영향 조사의 기각) (1)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영향 조사가 필요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영 제64조에 의한 정당한 신청자가 아닌 경우
2.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3. 당해 수입실적, 국내 산업발전 저해가 현저하게 경미한 경우
4. 기타 일반적인 증거 등 기본적 사실이 결여된 경우

(2)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산업영향조사를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영향 조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영향 조사개시 공고) (1) 영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 공고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자
2. 신청자
3. 신청물품
4. 신청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영향 조사개시를 공고할 때에는 무역조사관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1) 산업영향 조사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품목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시기, 조사일정 및 영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 구성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무역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조사단 구성에 전문가 참여) (1)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무역·경영·회계·법률 및 산업전문가를 조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질문서 송부) 무역조사관은 산업영향 조사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개최) (1) 상공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이도 상반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영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공청회의 주관을 의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영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중단) (1) 무역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사 중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심의·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7조(조사중지 등) (1)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 당해 조사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단체가 당해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또는 당해 물품의 국내생산자 단체 등에 직접 수출을 감소시키겠다는 제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의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 또는 단체등 간에 협의한 결과 국내산업 발전의 저해 또는 그 우려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1항의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으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지하거나

공지사항

- 종결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18조(조사의 중지·종결의 보고) 무역조사관은 조사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종결 되었을 때에는 조사중지·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 및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9조(재조사의 신청사유) 영 제70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명백한 사유”라 함은 대외무역법령 및 관계규정의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제20조(잠정조치 등 공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하여 그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취한 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치를 제한한 때
 3.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때
 4. 영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당해 조치를 폐지 또는 완화한 때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결하기로 한 때 또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하기로 한 때
- 제21조(대리인) (1) 산업영향조사 신청, 의견진술, 또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리인을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당사자의 당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당해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분석) (1) 무역조사관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이 과다한 품목중 국제 경쟁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산업영향 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상공부장관 및 위원회에 보고한다.
- (2) 제1항에 의한 산업영향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례 1) 수입에 의한 산업영향조사 신청서

이 신청서는 대외무역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에 규정한 특정물품의 급격한 수입의 증가 또는 과다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양식입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통계 등 각종 보조증빙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한 각종 통계는 과거 3년 이상의 수치를 연도별(가능하면 분기별, 월별)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로 유지하고 싶으신 자료는 명확히 “비밀” 표시를 하여 다른 자료와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산업영향 조사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일반 사항

1. 신청인

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 신청인이 대표하고 있는 회사명(또는 생산자 협회, 생산자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등) 및 당해 신청 품목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 국내 생산량 (단위) (%)

○ 국내 생산업체 (개) (%)

○ 농림 수산업 (명)

다. 신청인이 대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사신청 품목의 동종,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여타 회사명과 주소 및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조사신청 품명

가. CCCN,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나. 수출자, 수입자, 수입실적(물량 및 금액) 및 향후 예상 수입량

다.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및 생산자명

3. 국내산업 현황

가. 조사신청 물품과 동종,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업체 현황

나. 국내 생산량 추이

공지사항

- 다. 국내시장 규모
- 라. 국내수급 현황
- 마. 국내수입자명 및 수입실적
- 4. 수입추이
 - 가. 수입실적(수량, 금액, 증가율)
 - 나. 수입의 국내시장 점유율
- 5. 산업발전의 저해 또는 저해 우려
 - 가. 신청물품과 국산물품의 품질 비교
 - 나. 국산과 수입품의 국내시장 가격 비교
 - 다. 국산가격 변동 추이
 - 라. 국산 및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 마. 국내생산업체 가동률 추이
 - 바. 국내생산업체의 매출액 및 손익 추이

- 사. 국내생산업체, 도·소매업체 재고량 추이
- 아. 고용, 임금수준 및 추이
- 6. 수입이 산업발전 저해에 미친 영향
 - 가. 국내가격에 미친 영향
 - 나. 국내산업의 매출액, 손익에 미친 영향
 - 다. 국내생산에 미친 영향
 - 라. 국내고용, 임금에 미친 영향
 - 마. 거래선 상실 등 기타 영향

***참 고**
 본 신청서의 작성시 사용하신 통계에 대하여 그 출처가 있을 경우 이를 밝혀주시고, 만약 추정치일 경우에는 그 추정방법을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영향조사신청 (요약서)

1. 신청물품

CCCN	물 품 명	무역계획	물품개요 및 용도

3. 수급현황

구분 연도	수 요		공 급		수입의존도 (%)
	내 수	수 출	국 산	수 입	

2. 관련업체 현황

구분 연도	수 출 업 자			수입업자		국내생산업자	
	수출국	업체명	수출금액	업체명	수입금액	업체명	생산액

4. 산업발전저해

구분 연도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매출액	재고량	고용인력	임금수준 (1인당 월평균)

5. 무역 및 산업보호 사항

